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83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품목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추천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 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 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

한다)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품목별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중에 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공급의무기한 내에 실수요자(추천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자 등으로 품목별 공고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 증빙 자료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실수요업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실수요자 배분) ① 추천기관의 장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가급적 실수요자에게 추천물량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 물량을 추천하면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보고) ① 할당 물량을 추천받아 수입한 자는 판매가격 등 수입이행 결과(별지 제6-1호 서식)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추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받아 수입한 자가 실수요자로 판매가격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보고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업통상과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2호 서식)
2. 제1항의 수입이행 결과(별지 제6-3호 서식)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추천취소) ①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천 취소 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할당관세 추천대상에서 제

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관검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 또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1108.13, 3505.10, 3505.20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는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는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단, 2026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별표 3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⑦ 별표 7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단, 2026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별표 1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한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27호는 폐지한다.

[별표 1]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찢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0408	1	알의 노른자위					
0408	1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4,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수입업체 또는 실수요업체
0408	19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0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allus dom 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8	99	기타							
		1. 닭[갈루스 도메 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 에서 계산한 유장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0			
3502	19	기타	식품 원료용 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0811		냉동 과일과 냉동 견과류 (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찢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	10	초본류 딸기		5	5,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 제조· 가공업 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0811	90	기타	과실로 한정 한다.	5	10,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 제조· 가공업 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정제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1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	19	기타 1. 정제유(精製油) 가. 해바라기씨유	0	5,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 [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	1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0	수입 전량		
1804	00	코코아 버터(지방이나 기름)	0	수입 전량		

1805	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	수입 전량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20	파인애플		15	8,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업체 (단,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2008	30	감귤류 과실	유자는 제외한다.	15	1,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업체 (단,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2008	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	97	혼합물					
		1. 과일 칵테일					
		가.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5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제조· 가공업체,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나. 기타		15			
		2. 기타	과일 샐러드 및 그 밖의 과일 혼합물의 것으로 한정 한다.	15			
2008	99	기타					
		6. 기타	과일로 한정 한다.	15	7,5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제조· 가공업체,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2009		과일·견과류 주스 (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					

		[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7	사과주스					
2009	79	기타		15	1,5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 제조· 가공업 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2]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유장	사료용	0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乳糖)·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1) 유당(乳糖)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유장농축 단백질	사료용	0	21,000톤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대용유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단미·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2) 기타	사료용	0			
		나. 기타	사료용	0			
0714		매니옥(manioc)·칩뿌리 · 살렘(salep)· 돼지 감자(Jerusalem artichoke)· 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괴경(塊莖)[얇게 썬 것 이나 펠릿(pellet) 모양 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	10	매니옥(manioc) [카사바(cassava)] 2. 건조한 것					

		가. 칩	주정용	10	60,000톤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주정)제조 면허업체 중 국세청 원료 배정을 받은 업체
		나. 펠릿(pellet)	사료용	0	100,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 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	1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수입 전량	-	-
0901	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1003		보리					
1003	90	기타					
		2. 겔보리	사료용	0	80,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사료 제조업등록업체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1. 사료용		0	11,000,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양농수산개발협회	배합·단미사료 제조업등록업체, 국가시험연구기관
		3. 기타	가공용	0	1,900,000톤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콘협회 한국곡물음료 재가공업협동조합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전분 및 전분당 제조업체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1108	13	감자로 만든 것	식품용	0			
3505		텍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 나이징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텍스트린 이나 그 밖의 변성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식품용)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용) 라면 및 기타식품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 업체
					200,500톤	(사료용) 한국사료협회	(사료용)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양식사료 생산 업체

3505	10	텍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식품용[텍스트린과 가용성 전분(아밀로겐)을 제외한다] 및 사료용(프리젤라티나이지드전분이나 스웰링 전분)으로 한정한다.	0				
3505	20	글루(glue)	식품용	0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	90	기타						
		1. 채유용과 탈지대두박 (脫脂大豆粕)용		0	1,100,000톤	한국대두가공협회	채유 및 사료용 탈지대두박 제조업체 (미생물배양용 포함)	
1214		스위드(swede)·맹골드 (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건초·루우산(lucerne) (알팔파)·클로버(clover) ·샌포인(sainfoin)· 사료용 케일(kale)· 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	90	기타					
		1. 사료용 뿌리채소류		0			
		2. 기타					
		나. 기타	사료용	0	500,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자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마사회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양축농가 및 수입대행업체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waste)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기타	사료용	0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 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9	기타				
1701	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5	120,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 제조· 가공업 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1701	99	기타	5			
1801	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볶지 않은 것	0	수입 전량	-	-
2101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에센스(essence)·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 ·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2101	1	커피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	11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인스턴트 커피	3	3,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0	수입 전량	-	-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 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 (알코올의 용량은 상관 없다)					
2207	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조주정(粗酒精)		0	156,000 킬로리터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주정)제조 면허업체 중 국세청 원료배정을 받은 업체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	30	밀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40,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 (beet-pulp), 버개스					

		(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 (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 (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	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 (wast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사료용	0	수입 전량		
			2. 버섯 재배용	0	25,000톤	한국버섯생산자 연합회	버섯 재배농가 및 수입대행 유통업체
2304	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백[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 (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사료용	0	2,000,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업체, 국가시험연구기관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90	기타					

		4. 기타	대 용 유 배 합 사 료 제 조 용	0	12,000톤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2825	50	산화구리와 수산화 구리					
		2. 수산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 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 · 수산화염화물, 브롬 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수입 전량	-	-
2827	4	산화염화물과 수산화 염화물					
2827	4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 염화구리					
		2. 수산화염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 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833		황산염 · 명반 · 과산화 황산염(과 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5	황산구리						
		1.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 한다)	0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 올 · 에테르페놀 · 에 테르알코올페놀 · 과 산화알코올 · 과산화 에테르 · 과산화아세 탈과 과산화헤미아 세 탈 · 과 산 화 케 톤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과 이들의 할로젠화 유도체 · 술폰화유도 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30	방향족(芳香族)에 테 르와 이들의 할로젠 화유도체 · 술폰화유 도체 · 니트로화유도 체 · 니트로소화유도 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09	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4		케톤 ·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7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7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다)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 복시산과 이들의 무 수물(無水物)· 할로 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할 로겐화유도체· 술폰 화유도체· 니트로화 유도체· 니트로소화 유도체						
2915	3	초산에스테르						
2915	39	기타	초산아밀, 초 산이소아밀, 초산메틸, 초 산이소부틸, 초산 2-에톡 시에틸은 제 외하고, 「농 약관리법」 에 따라 등 록된 농약원 제(農藥原 劑)로 한정 한다.	0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 르복시산· 환식모노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할 로겐화물·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 화유도체 · 니트로 화유도체 · 니트로소 화유도체					
2916	1	불포화비환식모노카 르복시산, 이들의 무 수물(無水物) · 할로 젠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 도체					
2916	19	기타	농약원제(農 藥 原 劑) (「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 로 한정한다)	0			
2916	20	포화지환식 · 불포화 지환식 · 시클로테르 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 物) · 할로젠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 한다)		0			
2916	3	방향족(芳香族) 모노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할로젠화물·과산화 물·과산화산, 이들 의 유도체					
2916	31	벤조산, 그 염과 에 스테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 原劑)(「농약관 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 는 카르복시산과 이 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젠화물·과산 화물·과산화산, 이 들의 할로젠유도체 · 술폰화유도체·니 트로화유도체·니트 로소화유도체					
2918	30	알데히드·케톤관능 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 지지 않은 것으로 한 정한다), 이들의 무 수물(無水物)·할로 젠화물·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8	9	기타						
2918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90	기타						
		1. 인산에스테르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0					

		한정한다)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 (할로겐화수소의 에 스테르는 제외한다) 와 이들의 염, 이들 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 트로화유도체 · 니트 로소화유도체						
2920	1	티오인산에스테르 (포스포로티오에이 트)와 이들의 염, 이 들의 할로겐화유도 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 트로소화유도체						
2920	11	파라티온(ISO)과 파 라티온-메틸(ISO) (메틸-파라티온) 1.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0					
2920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0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2920	2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 젠화유도체·술폰화 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 도체					
2920	29	기타	농약원제(農 藥 原 劑) (「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 로 한정하 다)	0			
292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0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4	방향족(芳香族) 모노 아민과 이들의 유도 체, 이들의 염					
2921	42	아닐린유도체와 이					

		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1	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1	4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50	아미노-알코올페놀 · 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 미노화합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 한다)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 능화합물, 탄산의 아 미드관능화합물					
2924	1	비환식아미드(비환 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 드(ISO), 모노크로토 포스(ISO), 포스파미 돈(ISO)	포스파미돈 (ISO)[「농 약관리법」 에 따라 등 록된 농약원 제(農藥原 劑)로 한정 한다]	0			
2924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 原劑)(「농약관 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	환식아미드(환식카 르바메이트를 포함					

		한다)와 이들의 유 도체, 이들의 염						
2924	21	우레인과 이들의 유 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0					
2924	25	알라클로르(ISO)						
		1.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0					
2924	29	기타						
		3. 기타						
		다. 기타						
		1) 농약원제(農藥 原劑)(「농약관 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 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 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	1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 체, 이들의 염						
2925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 原劑)(「농약관 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2	이민과 이들의 유도 체, 이들의 염						
2925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 原劑)(「농약관 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 리법」에 따라 등록	0					

		된 것으로 한정한다)					
2928	00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0		유기-황 화합물					
2930	20	티오키르바메이트와 디티오키르바메이트					
		1. 티오키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 디티오키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0	30	티우람모노술파이드 · 티우람디술파이드 ·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티우람디술파이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3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그 밖의 유기-무기 화합물						
2931	4	비할로젠화 유기인 유도체						
2931	4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5	할로젠화 유기인 유도체						
2931	54	트리클로르폰(ISO)	농약원제(農藥原劑)(「농	0				

			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931	5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	1	불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0				

		된 것으로 한정한다)							
2932	20	락톤							
		10.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9	기타							
2932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헥테로고리 화합물							
2933	1	불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0				
2933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0				
2933	2	불지 않은 이미다졸 고리(수소를 첨가하 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 물					
2933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 原劑)(「농약관 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3	불지 않은 피리딘고 리(수소를 첨가하였					

2933	39	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4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	4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5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5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6	불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69	기타						
		3. 기타						
		나.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7	락탐						
2933	79	그 밖의 락탐	1-비닐-2-피롤리돈은 제외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0				

			원 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2933	9	기타						
2933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10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20	벤조티아졸 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9	기타						
2934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5		술폰아미드						
2935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항생물질						

2941	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 의 염		0					
		1.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2941	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 의 염	농약원제(農 藥 原 劑) (「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 로 한정하 다)	0					
294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0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 누는 제외한다), 조 제 계면활성제·조 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							

		관없으며 제3401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4	그 밖의 유기계면활 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	42	비이온성					
		1.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0				
3808		살충제·살서제(쥐 약)·살균제·제초 제·발아억제제·식 물성장조절제·소독 제와 이와 유사한 물 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 품으로 한 것·제품 으로 한 것(예: 황으 로 처리한 밴드·심 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하 다]					
3808	9	기타					
3808	91	살충제					
		1. 농약원제(農藥原	0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3808	92	살진균제						
		1.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0				
3808	93	제초제·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제초제, 식물 성 장 조 절 제 [「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원제(農藥原 劑)로 한정 한다]	0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 으로 한정한다), 따 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이나 연관공업에 따 른 조제품(천연물만 의 혼합물을 포함하 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2. 향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료나 비료제조용	0	수입 전량	-	-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	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 (인산이암모늄)	비료 제조용	0	수입 전량	-	-
------	----	--------------------------	--------	---	-------	---	---

[별표 3]

2026년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803		바나나 [플랜틴 (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	90	기타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29,000톤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0804		대추야자·무화과· 파인애플·아보카도 (avocado)·구아바 (guava)·망고(mango)· 망고스틴(mangosteen)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30	파인애플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33,500톤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0804	50	구아바(guava)·망고 (mango)·망고스틴 (mangosteen)	망고(mango)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8,500톤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별표 4]

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207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 동한 것으로 한정하 다)					
0207	1	닭[갈루스 도메스티 쿠스 (<i>G a l l u s</i> <i>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	12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으로 한 정한다)		0			
0207	14	절단육과 설육(屑 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2. 설육(屑肉) *나. 기타		0 0	30,000톤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사)한국외식 산업협회 (사)한국육가공 협회	실수요업체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 육(屑肉)·피·곤충					

1602	3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	32	*닭[갈루스 도메스 티쿠스(<i>Gallus</i> <i>domesticus</i>)종의 것 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삼계탕 이외의 것	0			

비고: 품명란에 “*” 표시된 품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
관리품목을 말한다.

[별표 5]

2026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냉동한 것					
0203	2						
0203	29	*기타	삼겹살은 제 외한다.	0	12,000톤	(사)한국육가공 협회	식육가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등

비고: 품명란에 “*” 표시된 품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
관리품목을 말한다.

[별표 6]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803		바나나 [플랜틴 (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	90	기타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29,000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0804		대추야자·무화과· 파인애플·아보카도 (avocado)·구아바 (guava)·망고(mango)· 망고스틴(mangosteen)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30	파인애플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33,500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0804	50	구아바(guava)·망고 (mango)·망고스틴 (mangosteen)	망고(mango)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8,500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별표 7]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찢은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	1	알의 노른자위					
0408	11	*건조한 것	닭 [갈 루 스 도 메 스티 쿠 스 (<i>Gallus domesticus</i>)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8	19	*기타	닭 [갈 루 스 도 메 스티 쿠 스 (<i>Gallus domesticus</i>) 종으로 한정	0	8,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수입업체 또는 실수요업체

			한다]의 것 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닭 [갈 루 스 도 메 스티 쿠 스 (<i>Gallus</i> <i>domesticus</i>) 종으로 한정 한다]의 것	0				
0408	99	기타						
		*1. 닭[갈루스 도메 스티쿠스(<i>Gallus</i> <i>domesticus</i>)종으 로 한정한다]의 것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 의 것	0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 에서 계산한 유장단 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을 초과하는 둘 이상 의 유장단백질의 농 축물을 포함한다)· 알부민산염과 그 밖 의 알부민 유도체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 의 것	0			
3502	19	*기타	식품 원료용 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0811		냉동 과일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 은 것이나 물에 삶 거나 찢 것으로 한 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다)					
0811	90	*기타	과일로 한정 한다.	5	10,000톤	한국식품산업 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 유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 에 상관없으며 화학 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1	해바라기씨유 · 잇꽃 유와 그 분획물					

1512	19	기타					
		1. 정제유(精製油)					
		*가. 해바라기씨유		0	10,000톤	한국식품산업 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1702		그 밖의 당류(糖類) [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 포도당·과당을 포함 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 劑)나 착색제를 첨 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 (천연꿀을 혼합했는 지에 상관없다), 캐 러멜당					
1702	60	*그 밖의 과당과 과 당시럽(건조 상태에 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 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 외한다.	과당시럽	0	3,000톤	한국식품산업 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1803		코코아 페이스트 (paste)[탈지(脫脂) 한 것인지에 상관없 다]					
1803	10	*탈지(脫脂)하지 않 은 것	0	수입 전량	-	-	
1804	00	*코코아 버터(지방 이나 기름)	0	수입 전량	-	-	
1805	00	*코코아 가루(설탕 이나 그 밖의 감미료 를 첨가한 것은 제외 한다)	0	수입 전량	-	-	
1901		맥아 추출물 (extract)과 고운 가 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 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 (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 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 지 않은 것으로 한 정한다], 제 0401 호					

		부터 제 0404 호까지 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 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 (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 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 지 않은 것으로 한 정한다]				
1901	90	기타 *1. 맥아 추출물 (extract)	0	600톤	한국식품산업 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 제조· 가공업 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 제하거나 보존처리 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 한 식물의 부분(설탕 이나 그 밖의 감미료 나 주정을 첨가했는 지에 상관없으며 따 로 분류되지 않은 것 으로 한정한다)				

2008	20	*파인애플		15	8,000톤	한국식품산업 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제조· 가공업체,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2008	9	기타(혼합물을 포함 하되, 소호 제 2008.19호의 혼합물 은 제외한다)					
2008	97	혼합물 1. 과실 각테일 *가. 설탕을 첨가 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나. 기타 *2. 기타		20	5,500톤	한국식품산업 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제조· 가공업체,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과실 샐러드 및 그 밖의 과실 혼합물의 것으로 한정 한다.	15			
2008	99	기타					

		*6. 기타		15	7,500톤	한국식품산업 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2009		과실·견과류 주스 (포도즙과 코코넛 워 터를 포함한다)·채 소 주스[발효하지 않 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2	그레이프프루트 (grapefruit) 주스, 포멜로(pomelo) 주 스					
2009	29	*기타		0	1,000톤	한국식품산업 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2009	3	그 밖의 한 가지 감 귤류로 된 주스					

2009	31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레몬주스	20	7,500톤	한국식품산업 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 제조· 가공업 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2009	39	*기타	레몬주스	20			
2009	4	파인애플주스					
2009	49	*기타		20	700톤	한국식품산업 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 제조· 가공업 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2009	7	사과주스					
2009	79	*기타		15			
2009	89	기타			3,000톤	한국식품산업 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 업체 (단, 식품 제조· 가공업 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1. 크랜베리 (cranberry)[바 치니움 매크로 카르폰 (Vaccinium macrocarpon)· 바치니움 옥시	딸기주스, 코 코넛 주스 (코코넛 워 터를 포함한 다)와 기타 견과류 주스 는 제외한다.	20			

		코 코 스 (Vaccinium oxycoccos)]와 링 곤 베 리 (lingonberry) [바치니움 비티 스 - 이 다 에 아 (Vaccinium vitis-idaea)] 이외의 과실·견 과류 주스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 인지 또는 펠릿 (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 성·미생물성 지방이 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	60	팜 너트(palm nut) 나 핵(核)에서 나온 것	0	20,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사료 제조업등록업체, 국가시험연구 기관

비고: 품명란에 “*” 표시된 품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
관리품목을 말한다.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 량 및 단 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6.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제2-1호 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26. . 까지 ○ 보세구역 반출기한 : 2026. . 까지 ○ 실수요자 공급기한 : 2026.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26. . 추천기관의 장 (인)							
※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기한, 실수요자 공급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2026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26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 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분 할 추 천 신 청 서									
신청인	① 상 호	(인)							
	② 주 소								
	③ 대표성명								
④ 신청내용									
⑤세번부호 (HS)	⑥품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 천 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 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26.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5호 서식)

할 당 관 세 적 용 분 할 추 천 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

③ 주 소

④ 대표성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명	수입국	수입 예정일자	당 초 추 천 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 2026. .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 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
할 추천합니다.

2026. . .

추천기관의 장 (인)

(제6-1호 서식)

업 체 명

(전화번호, 담당자)

문서번호 : 2026. . .
받 음 : 추천기관명 발신 (인)
참 조 :
제 목 : 2026년 */4분기 할당관세 수입이행 결과 보고(월별)

1. 2026년 */4분기 할당관세 수입이행결과(월별)

(단위 : 톤, \$)

기간	품 명 (HS)		한계 수량	통관실적(A)		판매실적*(B)		재 고 (A-B)	판매 가격** (원/톤)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00월		수 량							
		금 액							
00월		수 량							
		금 액							
00월		수 량							
		금 액							

* 실수요업체의 경우 사용 실적(또는 사후관리 실적) 기재

** 판매가격: 당해 분기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평균가격(원화)

2. 할당관세 재고 보유 사유 및 보완계획

(제6-2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담당자)

문서번호 : 2026. . .
받 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신 (인)
참 조 : 품목담당과장
제 목 : 2026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

1. 2026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단위 : 톤, \$)

품 명 (HS)		한계수량 (A)	추천실적		통관실적(B)		비 고 (A-B)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한계수량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붙임: 추천기관 수입이행결과 1부. 끝.

(제6-3호 서식)

추천기관수입이행결과

업체명	월별	품명 (HS)	수입량		통관량		전월 재고	판매물량 (또는사용 물량)	기타물량	총 재고(월 말 기준)	평균 판매가 격(원)
			해당 월	누 계	해당 월	누 계					